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0

발의연월일: 2020. 6. 26.

발 의 자:조오섭·송갑석·문진석

노웅래 • 진성준 • 윤영덕

이용빈 • 주철현 • 신정훈

민형배 · 이병훈 · 임호선

양기대 · 허종식 · 김회재

윤준병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이전기관의 선도적 역할과기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이전공공기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력이 저조하고, 지방자

치단체·이전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소 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관계를 지원해 줄 핵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이 15.7%에 불과하고 소규모 기업이 93%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율 또한 13.4%에 불과하여 해당 계획과 실적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 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계획과 실적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5제2항·제3항, 제47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29조의5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에"를 "통보·공개에"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중 "을 유치·지원하고"를 "의 유치·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①・② (생	발전에 대한 기여)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	③
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통보하여</u>	<u>통</u> 보하고,
<u>야</u>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
	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
	<u>여</u> 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생 략)	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2
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	
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통보하여</u>	<u>통</u> 보하고,
<u>야</u>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
	<u> 개하여야</u>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③

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 실적의 <u>통보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역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지원하고 역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7. (생략)

<신 설>

8. (생략)

③ ~ ⑤ (생 략)

통보·공개에	
·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	
터 설치·운영 등) ①	
니 결시 단경 중/ ①	
의 유치·지원 등	
②	
1. ~ 7. (현행과 같음)	
8.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	
 진	
 9. (현행 제8호와 같음)	
<u>3</u> (한경 제3오기 끝리) ③ ~ ⑤ (현행과 같음)	
(U) (U) (U) (U) (E) (I) (I) (I) (I) (I) (I) (I) (I) (I) (I	